

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지형도면고시

「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」 수립을 위해 『건축법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자 「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-1471 (2017.12.1.)호」로 주민의견 청취 및 『건축법』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『같은법 시행령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. 12. 29.

인천광역시장

1. 제한지역

위 치: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, 주안동, 용현동, 서구 가정동, 석남동, 가좌동 일원
면 적: 1,034,819㎡
제한지역도면(지형도면): 게재 생략

2. 제한사유

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확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무계획적인 건축물 입지 시 경인고속도로변 및 주변지역 “애인가로 및 특화가로” 조성에 문제가 있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

3. 제한대상

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 1. 제1호 단독주택 중 나목 다중주택
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 1.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거목 다중생활시설
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 1.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 다중생활시설

4. 제한항목: 『건축법』 제11조 건축허가, 제21조 착공신고

5. 제한기간: 고시일로부터 2년간(단,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)

5. 관계도서: 비치된 도서와 같음(계재 생략)

6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(032-440-4192), 남구청 건축과(032-880-4452), 서구청 건축과(032-560-4722)에 비치하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.